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9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한강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5년간 연평균 9.5%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별표 2)
- 나. 가정용 누진제 폐지, 일반용 누진제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안 별표 2)
- 다. 유출지하수는 현재 가정용 최저 요율이 적용됨에 따라 가정용과 연계하여 개편(안 별표 2)
- 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5. 6. 12. ~ 7. 2.)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윤석진 (☎ 2133-385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가목,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영“ 이라 한다.)”를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납부토록”을 “납부하도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의2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로, “경우 :”를 “경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 (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m³)	연도별 단가(원/m³)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부터
가정용	m³당	480	560	630	700	770
욕탕용	500이하	520	590	660	730	800
	500초과~2,000이하	630	710	790	870	950
	2,000초과	720	810	890	970	1,050
일반용	30이하	580	660	740	820	900
	30초과~100이하	1,550	1,690	1,830	1,970	2,100
	100초과~1,000이하	2,100	2,200	2,300	2,400	2,500
	1000초과	2,200	2,300	2,400	2,500	2,600
유출지하수	m³당	480	560	630	700	77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u>한다.</u>)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p> <p>4. ~ 11. (생략)</p> <p>12. "타행위"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u>주택법</u>」, 「<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u>」, 「<u>택지개발촉진법</u>」 및 「<u>도시개발법</u>」 등에 따른 <u>도시개발사업</u> 등의</p>	<p>제2조(정의) ----- ----- <u>뜻은</u>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한다</u>) - ----- ----- ----- ----- ----- ----- ----- ----- -----.</p> <p>4. ~ 11. (현행과 같음)</p> <p>12.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u>주택법</u>」, 「<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u>」, 「<u>택지개발촉진법</u>」 및 「<u>도시개발법</u>」 등에 따른 <u>도시개발사업</u> 등의</p>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생략)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생략)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23조(사용료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현행과 같음)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현행과 같음)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

-- 한다)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② (생략)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
분하여 각 연도 분을 해당 연도
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
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⑤ (생략)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
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
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
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
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 6. (생략)

② (생략)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
금) ① ~ ③ (생략)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
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

수도 조례」 제26조 -----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당 연도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
인자부담금) ① -----

-----.

1. -----
----- "영"이라 한다) ---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
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하되, 제29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 다만 제29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산액을 준공 전 분할 납부토록 하되 준공 시에 정산 징수(납부)한다.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2. (생략)
3.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구(강남구는 제외한다.)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생략)
- ② (생략)

----- . -----

----- 납부하도록 -----

----- .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제외한다)-----

-----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3조의2(소멸시효) -----

----- 「지방재정법」 제82조-----

-----.

제34조(감면)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9.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10.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11. · 12. (생략)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14.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15. (생략)

② ~ ⑤ (생략)

9. -----

경우 : -----

10. ----- 경
우 : -----

11. · 12. (현행과 같음)

13. -----

경우: -----

14. ----- 「지하수법 시
행령」 제14조의2-----

----- 경우: -----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금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금표(1개월 기준)

업종	구분	2022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가정용	30이하		400
	30초과~50이하		930
	50초과		1,420
목탕용	500이하		440
	500초과~2,000이하		550
	2,000초과		630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유출지하수	1,000초과		2,030
유출지하수	㎡당		40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금 및 업종구분 (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금표(1개월 기준)

업종	구분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부터
가정용	㎡당		480	560	630	700	770
목탕용	㎡당	500이하	520	590	660	730	800
		500초과~2,000이하	630	710	790	870	950
		2,000초과	720	810	890	970	1,050
일반용	㎡당	30이하	580	660	740	820	900
		30초과~100이하	1,550	1,690	1,830	1,970	2,100
		100초과~1,000이하	2,100	2,200	2,300	2,400	2,500
		1000초과	2,200	2,300	2,400	2,500	2,600
유출지하수	㎡당	480	560	630	700	770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없음(세외수입 중 하수도사용료 증가)
2. 비용추계의 전제: 2026~2030년 적용 하수도사용료 인상
3. 비용추계의 결과(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액)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세입	하수도사용료	137,716,348	205,945,136	266,003,813	325,385,019	383,589,066	1,318,639,382
		-	-	-	-	-	
	소계(a)	137,716,348	205,945,136	266,003,813	325,385,019	383,589,066	1,318,639,382
세출	시설비	137,716,348	205,945,136	266,003,813	325,385,019	383,589,066	1,318,639,382
		-	-	-	-	-	
	소계(b)	137,716,348	205,945,136	266,003,813	325,385,019	383,589,066	1,318,639,382
□ 총 비용(a-b)		-	-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	-	-	-	-	-
	세외수입	137,716,348	205,945,136	266,003,813	325,385,019	383,589,066	1,318,639,382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37,716,348	205,945,136	266,003,813	325,385,019	383,589,066	1,318,639,382

5. 덧붙이는 의견: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액 추계임

6. 작성자: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윤석진 (☎ 2133-385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액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계
하수도사용료(인상 전)	730,820,659	752,745,279	775,327,637	798,587,466	822,545,090	3,880,026,131
하수도사용료(인상 후)	868,537,007	958,690,415	1,041,331,450	1,123,972,485	1,206,134,156	5,198,665,513
수입 증가액(인상 후)	137,716,348	205,945,136	266,003,813	325,385,019	383,589,066	1,318,639,382

2.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인상전 하수도사용료 수입)

(단위 : 천원)

회계명	실국명	부서명	장		관		항		세목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0	세외 수입	210	경상적 세외 수입	212	사용료 수입	21203	하수도 사용료						전년대비 3% 증	전년대비 3% 증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계획과	200	세외 수입	210	경상적 세외 수입	212	사용료 수입	21203	하수도 사용료	688,868,564	709,534,621	730,820,659	752,745,279	775,327,637	798,587,466	822,545,090

3. 연도별 조정액 추계(인상후 하수도사용료 수입)

(단위 : 원)

업종	구간(m)	2025년조정량			요율 통합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조정량(m)	요율	조정액	요율	조정액	요율	조정액								
가정용	30이하	717,017,230	400	286,806,891,966	410	293,977,064,266	480	344,168,270,360	560	401,529,648,753	630	451,720,854,847	700	501,912,060,941	770	552,103,267,035
	30초과~50이하	6,542,429	930	6,084,458,719	410	2,682,395,779	480	3,140,365,790	560	3,663,760,089	630	4,121,730,100	700	4,579,700,111	770	5,037,670,122
	50초과	3,846,394	1,420	5,461,880,051	410	1,577,021,705	480	1,846,269,313	560	2,153,980,865	630	2,423,228,473	700	2,692,476,081	770	2,961,723,689
일반용	30이하	50,486,087	500	25,243,043,291	500	25,243,043,291	580	29,281,930,217	660	33,320,817,144	740	37,359,704,071	820	41,398,590,997	900	45,437,477,924
	30초과~50이하	18,738,227	1,000	18,738,226,948	1,320	24,734,459,571	1,550	29,044,251,769	1,690	31,667,603,542	1,830	34,290,955,314	1,970	36,914,307,087	2,100	39,350,276,590
	50초과~100이하	29,198,195	1,520	44,381,256,893	1,320	38,541,617,828	1,550	45,257,202,753	1,690	49,344,950,098	1,830	53,432,697,443	1,970	57,520,444,789	2,100	61,316,210,181
	100초과~200이하	29,219,470	1,830	53,471,629,866	1,890	55,224,798,058	2,100	61,360,886,731	2,200	64,282,833,718	2,300	67,204,780,705	2,400	70,126,727,693	2,500	73,048,674,680
	200초과~1,000이하	62,994,295	1,920	120,949,047,027	1,890	119,059,218,167	2,100	132,288,020,186	2,200	138,587,449,719	2,300	144,886,879,251	2,400	151,186,308,784	2,500	157,485,738,316
	1,000초과	92,721,183	2,030	188,224,001,031	2,030	188,224,001,031	2,200	203,986,602,102	2,300	213,258,720,380	2,400	222,530,838,657	2,500	231,802,956,934	2,600	241,075,075,212
육탕용	500이하	4,665,734	440	2,052,922,861	440	2,052,922,861	520	2,426,181,563	590	2,752,782,928	660	3,079,384,292	730	3,405,985,656	800	3,732,587,021
	500초과~2,000이하	5,679,210	550	3,123,565,722	550	3,123,565,722	630	3,577,902,554	710	4,032,239,387	790	4,486,576,219	870	4,940,913,051	950	5,395,249,883
	2,000초과	3,000,522	630	1,890,328,620	630	1,890,328,620	720	2,160,375,566	810	2,430,422,511	890	2,670,464,241	970	2,910,505,970	1,050	3,150,547,700
유출 지하수	m ² 당	20,830,725	400	8,332,290,131	400	8,332,290,131	480	9,998,748,157	560	11,665,206,183	630	13,123,356,956	700	14,581,507,729	770	16,039,658,502
합 계		1,044,939,701	732	764,759,543,125	732	764,662,727,030	831	868,537,007,062	917	958,690,415,316	997	1,041,331,450,570	1,076	1,123,972,485,825	1,154	1,206,134,156,856